

인천 강화 서히스타힐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서류

구분		대상	주요 확인 사항
신분증 사본		본인	•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인감증명서			•아파트공급계약용(인감도장대조필) 확인, 본인발급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
인감도장			•인감증명서상의 인장 확인
주민등록등본			•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주민등록초본			•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 및 사유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
출입국사실증명원			•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가족관계증명서			•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‘상세’ 로 발급
혼인관계증명서			•혼인 7년 이내 : 2014. 09. 14. 이후 혼인 신고일 확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‘상세’ 로 발급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	본인 및 세대원	•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
소득증빙서류 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등본상 직계존비속 포함			•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
추가서류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배우자	•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•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 및 사유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
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확인(※ 임신진단서 외 기타서류 불가)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		•견본주택 비치(자녀를 임신중인 경우 작성)
	친양자/입양 관계증명서		• 자녀가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확인 (□ 입양확인각서 추가 작성)
	비사업자확인각서	본인 및 세대원	•견본주택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작성)
대리신청시	위임장	당첨자	•당첨자의 인감도장날인
	당첨자 인감증명서		•아파트특별공급신청 위임용(인감도장 확인)
	당첨자 인감도장		•인감증명서 날인 후 원본 대조필
	대리인 신분증 사본, 도장	대리인	•대리인 본인 확인 ※ 서명 가능

◎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공급유형		구분	2020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					
			3인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	100%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	8,162,399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이하	7,236,192원	8,513,046원	8,513,046원	8,872,376원	9,333,628원	9,794,879원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~140%이하	6,030,161원~8,442,224원	7,094,206원~9,931,887원	7,094,206원~9,931,887원	7,393,648원~10,351,106원	7,778,024원~10,889,232원	8,162,400원~11,427,359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~160%이하	7,236,193원~9,648,256원	8,513,047원~11,350,728원	8,513,047원~11,350,728원	8,872,377원~11,829,835원	9,333,629원~12,444,837원	9,794,880원~13,059,838원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30%(상위소득)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
◎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일반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‘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’으로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기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 ④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②,④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 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: 직인날인)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③ 사업자등록증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,③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	① 세무서 ②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세무서 /해당직장 ②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
무직자		* 비사업자 확인 각서(분양사무소에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	* 접수장소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.09.14(화)이후 발행분]에 한하며 상기서류 미비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
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

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